

2022 생활교육 운영 계획

옥천초등학교

학교폭력

1.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

전체구성원 3명		교원(명)	2명	
		학부모(명)	1명(전체 구성원의 1/3이상 구성)	
순	유형	성명	구성원	임기
1	교원		교감	재직기간
2	교원		학교폭력책임교사	재직기간
3	학부모		5학년 학부모	학생 재학기간

1)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임기

- 전담기구 임기: 교원은 재직기간, 학부모는 별도의 임기 규정
- 중도에 학부모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: 신규 구성원의 임기는 전 구성원의 잔여 임기

2) 학교폭력 전담기구 여비

- 학부모 구성원에 한해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

2.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

1)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

- 신고접수대장 기록: 보호자 통보(일자, 방법 명시), 학교장 보고(72시간 이내 지체 없이 분리)

2) 교육지원청 보고

- 48시간 이내 서면보고(중대사안인 경우 즉시 유선 보고)
-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 인지 즉시 수사기관 신고(112, 117, 학교전담경찰관 등)

3) 학교폭력 사안조사

- 피·가해사실 여부 조사(담임교사 등 관련교사 적극 협조)
-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학교장이 지명한 소속 교원도 사안을 조사할 수 있음

4) 학교폭력 사안조사 결과 보고

- 조사 결과를 사안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보고

5)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

-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(보호자)의 의사 확인

6)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
-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 충족 및 피해학생(보호자)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요청

7)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

- 제4,5,6,8호 조치 졸업 직전 삭제 심의(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자 반드시 확인)
- 가해학생 조치 관리(유보)대장 기록 및 관리

8)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(학교장은 행·재정적 지원)

3. 학교폭력 사안처리 주요 내용

1) 학교폭력 아님 사안(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)

학교폭력이 아닌 사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, 오인 신고였던 경우 - 학교폭력 의심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,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- 피해학생(보호자)이 신고했지만 피해 측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
-----------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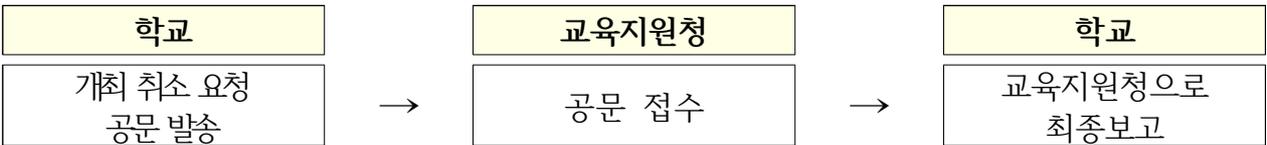
- 학교폭력 아님 확인서 작성(내부결재) → 교육지원청 보고
- 관련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→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
2) 학교장 자체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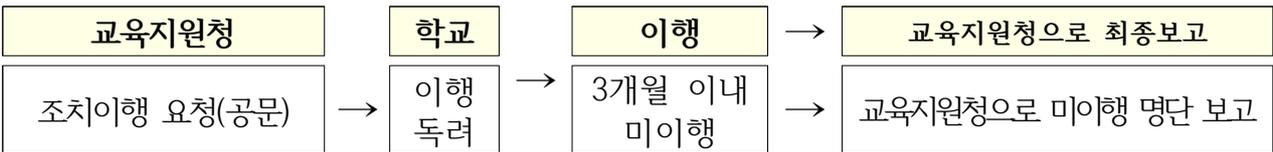
- 요건: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**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**
- 사안조사 보고서, 학교장 자체 해결 요청서, 심의결과 보고서(내부결재) → 교육지원청 보고
-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불가한 경우 → **심의위원회 개최 요청**

3)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

- 심의위원회 개최 전, 학교폭력이 아니었음이 인정되었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가 된 경우



4)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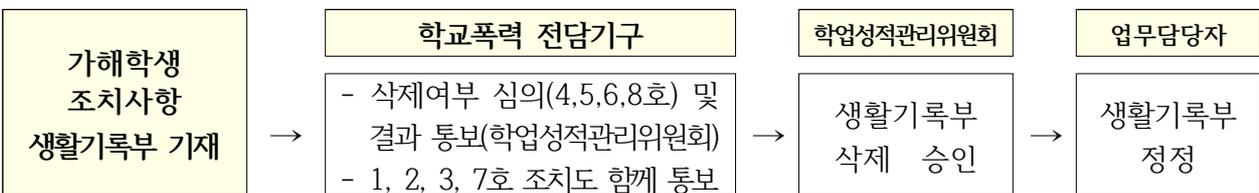


- 미이행 명단을 보고 받은 **교육지원청은 21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**

안내사항	- 관련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·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
------	--

5)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

- 삭제 절차



- 조건부 기재 유보 :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금지), 3호(학교에서의 봉사)

기재 유보 기준	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를 이행 기간 내에 완료 ② 동일 학교급(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간)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조건부로 기재하지 않음
----------	--

- 조치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학교폭력으로 추가 조치를 받은 경우 **소급 기재**

4. 학교폭력 예방교육

대 상	횟 수	방 법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)
학생	학기별 1회 이상 (연 2회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교생 또는 학급 단위로 실시하고 강의,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 활용 · 연 5차시(사이버폭력예방 1차시, 도박예방 1차시 포함, 안전교육계획 연계)
교직원	학기별 1회 이상 (연 2회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, 발생 시 대응요령,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
보호자	학기별 1회 이상 (연 2회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폭력 징후 판별, 발생 시 대응요령,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※ 감염병 등의 상황에 따라 교육자료 배부로 대신할 수 있음

5.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 역할

유 형	내 용
학교폭력 실태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·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필요한 경우 실시
교내 학교폭력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폭력 신고함,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, 담임교사의 문자·메일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· 피해·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· 학생, 학부모,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(예방교육 시)
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· 담임교사, 전문상담(교)사 등의 상담
교내·외 순회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점심시간, 쉬는 시간, 방과 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 · 학부모, 자원봉사자, 학생보호인력,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

6.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

- 1)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, **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**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.
- 2)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**이해와 공감**을 통해 **신뢰를 형성**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3)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**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회복조정 및 학교장 자체해결을 적극 활용**하되 축소·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.
- 4)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**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가급적 활용**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**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**하도록 한다.
- 5) 심의위원회 결정전까지는 **피·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**한다.
- 6)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시 **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**하여야 한다.
- 7)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, **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**하고 **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**.
- 8) **아동학대로 신고·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**할 수 있다.

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

1. 목적

- 가.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
- 나. 가정 내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
- 다. 학생, 학부모 및 교사 등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인식 유도
- 라. 지속적, 전문적인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가정폭력의 근원적인 근절
- 마.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확대 및 예방교육

2. 근거

- 가. 가정폭력 - 『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제1호의 행위
- 나. 가정폭력 예방교육 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3. 방침

- 가.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가정폭력(아동학대)예방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다.
- 나. 교사의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통한 가정폭력(아동학대)과 비행을 근원적으로 예방한다.
- 다. 정기적인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정폭력(아동학대)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한다.
- 라. 학교와 학부모, 학생이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가정폭력(아동학대)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.

4. 세부 추진 계획

가. 가정폭력 예방 실태 파악

- 1) 학기별로 각 학년 담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.
- 2) 가정폭력(아동학대)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한다.
- 3) 가정폭력(아동학대) 피해 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와의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활동을 실시한다.
- 4) 가정폭력(아동학대) 피해 아동의 치료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해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의 협조를 구한다.

나. 학생 대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

- 1)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담임교사의 집합교육 실시(관련교과시간과 연계하여 실시) 단, 원격 수업중일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
- 2)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 연 1회씩 실시
- 3)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지어 지도 한다.
- 4) 내용: 가족의 소중함, 가족 구성원의 역할,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한 실천 등 성평등의 관점에서

가정폭력예방,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

다.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

- 1)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: 2022 교직원 의무연수 과정(전북교육연수포털)으로 대체 가능함
- 2) 학생 상담활동 강화, 출결상황 관리 철저: 상시
- 3) 개별 상담, 이메일 및 쪽지 상담, 사이버 상담활동 전개를 통하여 학생이 부담없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
- 4) 조퇴 및 결석자에 대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도: 상시
- 5) 위기의 가정 학생의 가정환경 파악 및 상담활동 강화: 상시

라.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

- 1)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. 단, 코로나-19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가정통신문 등으로 대신함.
- 2) 가정폭력 피해 아동 상담 및 가정폭력 신고망 구축: 상시
- 3) 가정폭력 주의 요망 학생 전화 및 방문 상담: 상시
- 4) 정기적으로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안내문 발송: 학기당 1회

5. 기대효과

- 가. 학생,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가정폭력(아동학대)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것이다.
- 나. 가정폭력(아동학대)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으로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다.
- 다. 가정폭력(아동학대)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받아들여 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.